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7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3. 제출이유

충청북도의 전시·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오스코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청주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설의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 이용료의 기준을 마련함
(안 제5조, 별표)

라. 시설 이용의 제한 및 이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의 위탁과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가. 제출배경

-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의약 및 화장품산업이 집중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1·2산단 등의 관련 산업 생산 인프라와 MICE¹⁾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기업 간 상거래(B2B) 및 기업과 소비자의 직접거래(B2C)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행사 개최 시 민간 시설물 임대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 및 안정·지속적인 행사 개최 공간 필요
- 이를 위해 건립 중에 있는 청주오스코²⁾(OSCO : Osong Convention center) 설치·운영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함

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³⁾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
- 본칙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 제2조**는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오스코의 사업 내용을 규정함
 - 각종 전시회·박람회·이벤트 행사, 회의·세미나·심포지엄·공연·연회 개최, 시설·부대장비·편익시설의 임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4조**는 오스코를 이용하려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권을 규정하였고, 오스코 이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1) MICE? : Meeting(회의), Incentive tour(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의 4개 비즈니스 분야를 지칭

2) 오송읍 궁평리 104-2 / 2015년 ~ 2025년 / 건축면적 39,725㎡ / 건축비 1,425억원

3) 입법 예고 기간(2023. 5. 19. ~ 6. 8.)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함

- 안 제5조는 시설 이용료(별표)를 규정하였고, 세부 내용은 규칙에 위임함
- 안 제6조는 제5조의 이용료에 대해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을 사유로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오스코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규정함
- 안 제9조 및 10조는 오스코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의 위탁과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충북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과 전시·컨벤션 산업을 연계하는 공간인 청주오스코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함
- 다만, 안 제6조에 규정된 이용료 감경 사유는 포괄적 해석 및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료 감경으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 및 무분별한 감경 요청이 우려됨.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해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⁴⁾ 적시와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는 등 이용료 감경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입법례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전시·판매
2. 청년·벤처기업 관련 사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